<붙임 6>

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

※ 법 제418조제8호·제9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폐지시 작성한다.

1. 폐지업무의 종류 1-13-1 투자매매업

2. 폐지의 개요 (사유·시기·방법 등)

사유: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(1-13-1) 중 인수업 불필요.
실질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업무 단위 변경으로 자기자본의 효율성제고
시기: 2018년 3월 28일
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폐지 30일전 공고)
방법: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중 1-13-1 투자매매업에서 11-13-1투자매매업(인수업은 제외한다)으로 일부 폐지

3. 폐지공고내용, 공고일 및 공고신문

금융투자업 일부 폐지 공고문

당사는 2018년 2월 26일 제16차 이사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8호에 의거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중 1-13-1 투자매매업에서 11-13-1 투자매매업(인수업은 제외한다)으로 일부 폐지를 결의하여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7일
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
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8층
대표이사 김영재

한국경제신문, 매일경제신문
홈페이지공고

■ 첨부서류
1.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
2. 종전 업무에 대한 인가·등록등 확인서류 사본 1부
3.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 1부